

##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번 호	1032
-------------	------

제출년월일 : 2005. 10. .  
제출자 : 제천시장

### 1. 제안이유

행정기관의 주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특별휴가제도를 일부 조정하고, 민원편의를 위하여 점심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무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주 40시간 근무제의 실시 등(안 제13조)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등을 감안하여 1시간의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나.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요건 완화(안 제15조)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간외근무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다. 근무시간 및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는 기관 확대(안 제1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의 경우에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특별휴가의 조정(안 제23조)**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중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를 무급으로 하고, 포상휴가·장기재직휴가 및 퇴직준비휴가를 폐지하며, 경조사와 관련된 특별휴가로는 본인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배우자·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의 사망과 관련된 특별휴가를 인정하되, 휴가일수를 축소함.

**3. 근거법령 : 불 임**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7728호, 2005.3.31 일부개정)

**4. 의안전문 : 불 임****5. 신구조문대비표 : 불 임**

첨 부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892호, 2005.6. 30 일부개정)

2. 지방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 제18894호, 2005.6.30 일부개정)

3. 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표준안(충청북도 총무과-9050호)

##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5조의 제목중 “공휴일근무”를 “공휴일 등 근무”로 하고, 동조제1항중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로,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며,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공휴일”을 각각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제19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6항 내지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공휴일”을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p> <p>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p> <p>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내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p>
<p>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p> <p>①시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제15조(-----공휴일 등 근무)</p> <p>①-----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 ----- ----- 토요일 ----- 또는 공휴일-----.</p> <p>②----- 토요일 ----- 또는 공휴일----- -----</p>

현 행	개 정
<p>다만,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근무를 한 <u>공휴일</u>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 ----- <u>토요일</u> <u>또는 공휴일</u>----- ----- -----</p>
<p><u>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시장은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u></p>	<p><u>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u></p>
<p><u>제16조의2(토요일 휴무제) ①시장은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u></p> <p><u>②토요일 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u></p>	<p><u>&lt;삭 제&gt;</u></p>
<p><u>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u></p> <p><u>① - ⑤ (생 략)</u></p> <p><u>&lt;신 설&gt;</u></p>	<p><u>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u></p> <p><u>① - ⑤ (현행과 같음)</u></p> <p><u>⑥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u></p>

현 행	기 정
	<u>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u>
제23조(특별휴가) ① - ② (생 략) ③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답서 신설>	제23조(특별휴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 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 ⑤ (생 략) 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 이내의 포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포장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때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4.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④ -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	기 정
<p>⑦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원하는 시기에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장기재직휴가는 분할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p> <p>⑧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 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p> <p>⑨ (생 략)</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⑨ (현행과 같음)</p>
<p>제24조(휴가기간 중의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4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 ----- ----- -----</p>

현

행

개

정

[별표 3]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본인 · 자녀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7 1 1
회갑	· 본인 및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1
출산	· 배우자	3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7 5 3 3 3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조부모·외증조부모·외조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1 1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인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 할 수 있다.

[별표 3]

##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본인	7
출산	· 배우자	3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5 2 2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인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 할 수 있다.

# 관 계 법령

##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7428호, 2005.3.31. 일부개정]

제59조(위임규정)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법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8892호, 2005.6.30. 일부개정]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⑥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2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0조제1항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출 산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 제18894호, 2005.6.30.일부개정]

제2조(근무시간) ①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4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상수 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 까지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 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월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 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인	7
출 산	배우자	3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 참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